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5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안 제23조의2 제2호·제3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호·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 ③ (생략)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	④ ----- ----- ----- ----- ----- -----.

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생략) 2. <u>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u> 3. <u>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u> 4. (생략) ⑤ ~ ⑧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u> 3.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u> 4.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6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⑧ (생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러한 현행법령의 취지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려는 것임.

이때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 구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향입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근로자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안의 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